

월드미션대학교 장학금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 (근거) 본교 장학금은 우수한 선교사, 충성된 목회자, 유능한 평신도지도자를 육성함에 있다.

제 2조 (목적) 본 지침은 본 대학교 학칙에 규정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업무규정) 장학 업무는 본 대학교 직제 및 직무 규정에 규정된 장학위원회가 심의하여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제 2 장 장학생의 선발

제 4조 (자격) 본 대학교의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는 자
2. 해당 학기에 전임[12학점(대학)/9학점(대학원)]으로 등록한 자
3. 재학 중 징계 당한 사실이 없는 자
4. 직전 학기에 12학점(대학)/9학점(대학원) 이상을 취득하여 평균 성적이 2.5 이상인 자
5. 장학금 신청서를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제출한 자.
6. 미납금이나 미비서류가 없는 자.
7. 만족스러운 학업성취도(SAP)를 유지하는 자.
8. 장학금을 지급 받을 만하다고 인정된 자

제 5조 (장학금신청) 본 대학교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 양식에 따라 매학기 신청하여야 하며 장학금 신청 기간 및 방법은 매 학기 초 등록처에서 공고한다.

제 6조 (명단공고) 확정된 장학생의 명단은 각 개인에게 우편으로 전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 및 재원

제 7조 (장학금의 종류) 본 대학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본교진학 장학금

본교 학사과정을 졸업한 학생이 본교 대학원(MACC, M.Div., MAM, MAT) 에 진학할 경우 학비의 30%에 해당하는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M.Div 학생은 학비의 20%에 해당하는 설립자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성적평점이 2.5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선교 장학금

타 문화권에서 3년 이상 사역하고 본교에서 졸업 한 후, 반드시 선교지로 돌아갈 선교사와 원격교육 과정으로 수학하고 있는 선교사 중에서 선발한다. 학비의 25%에 해당하는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세 미만의 선교사 미혼자녀는 학비의 25%에 해당하는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성적평점이 학부는 2.0 대학원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3. 음악 장학금

학교를 잘 홍보할 목적으로 선발된 음악과 특별 장학생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성적평점이 학부는 3.0 대학원은 3.5 이상이어야 한다)

4. 가족 장학금

직계가족이 함께 본교에서 수학할 경우, 두 사람 중 등록 학점이 적은 사람 학비의 50%에 해당하는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학금은 두 사람에게 절반씩 분배하여 지급한다. (단, 성적평점이 학부는 2.0 대학원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5. 목회자 장학금

목회자나 목회자 배우자는 학비의 25%에 해당하는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세 미만의 목회자 미혼자녀는 학비의 25%에 해당하는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성적평점이 학부는 2.0 대학원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6. 교직원가족 장학금

- 1) 본 대학교 전임 교직원의 본인,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학비의 50%에 해당하는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 전임 교직원이 정년퇴직 또는 사망 및 이에 준한 사고로 퇴직하였을 경우에 배우자나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졸업 시까지 학비의 50%에 해당하는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성적평점이 학부는 2.0 대학원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온라인강의, 개인지도, 제반 행정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7. Matching 장학금

학생이 관련된 교회나 기관에서 발행하는 장학금을 본교에 전달할 경우, 본교에서 250불을 추가하여 학생에게 전달한다. (본교는 250불까지만 지원한다)

8. 학생회임원 장학금

학생회장은 (1,250불), 부회장(700불), 총무(700불)에 해당하는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1) 학부 학생은 4학기(48학점 이상), 대학원생은 2학기(18학점 이상)을 본교에서 이수해야 한다.
- 2) 직전 학기 성적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1년만 수여한다.

9. 지정장학금

장학금을 지원하는 교회 또는 개인 후원자가 대상자, 금액 및 지급기간을 정한다.

(단, 성적평점이 학부는 2.0 대학원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 1) 재순장학금 (임재순사모)
- 2) 봉모장학금 (정봉모장로)
- 3) 경애장학금 (이원희목사 딸)
- 4) 성환장학금 (윤성환목사)
- 5) 승용장학금 (이병주장로 아들)
- 6) 순자장학금 (정순자권사)
- 7) 건준장학금 (곽건준장로)
- 8) 동순장학금 (임헬렌집사 모친)
- 9) 금순장학금 (이종현권사 모친)
- 10) 대순장학금 (임영자사모 모친)

제 8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아래의 원칙에 따라 지급한다.

1. 한 사람에게 한 학기에 학비의 100% 이상을 수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음악 장학금은 개인 렛슨비를 포함하지 않는다.
3. 모든 프로그램의 선수과목은 장학금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학금 수혜 자격은 매 학기 갱신하여야 한다.
5. 장학금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이중장학금 금지).
단, 근로장학금, 학생임원 장학금, 외부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제 9조 (장학금 신청 세부사항) 장학금 신청은 아래의 세부원칙에 따른다.

1. Pell Grant 로 학비를 모두 납부 할 수 있는 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2. 장학금 신청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비서류, 미납금이 있는 학생은 신청한 장학금을 수령할 수 없다.

부 칙

제 1조 (개정) 본 지침의 개정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의하여 교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 2조 (발표) 본 개정지침은 1990년 9월 3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시행일 : 이 지침은 1990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1990년 9월 3일	개정 1992년 9월 2일	개정 1996년 10월 8일	개정 1998년 4월 6일
개정 1998년 10월 29일	개정 1999년 4월 7일	개정 2000년 2월 24일	개정 2001년 1월 25일
개정 2008년 3월 26일	개정 2010년 11월 18일	개정 2011년 3월 21일	개정 2011년 7월 25일
개정 2013년 10월 10일	개정 2014년 11월 7일	개정 2015년 4월 13일	개정 2015년 7월 10일
개정 2015년 11월 7일	개정 2016년 10월 27일(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